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
----------	------

발의연월일 : 2020. 7. 7.

발 의 자 : 김용판 · 박덕흠 · 윤창현  
송언석 · 성일종 · 정희용  
최춘식 · 이명수 · 강대식  
추경호 · 구자근 · 박대수  
신원식 · 김형동 · 홍석준  
이종성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험물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⑦ (생략)	<u>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자</u> ② ~ ⑦ (현행과 같음)
------------	---